

잔설·차량 인도 점령...보행자 '이중고'

인도 위 불법주정차해마다2천여건 ↑...눈도 쌓여 통행 큰 불편 권익위 행정조치 대책 마련 권고...자치구 "시민 인식 제고 필요"

"인도 위 잔설 때문에 안 그래도 통행이 힘든데,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갈아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27일 오전 9시께 북구 용봉동 상가 밀집구역. 인근 인도 위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빼곡했고, 시민들은 차량 사이 사이를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

특히 인도 위에는 제설작업 후 남은 잔설로 시민들은 좁고 미끄러운 통로를 지나가지 못해 차도로 돌아서 걷는 모습도 연출됐다.

장모 (33)씨는 "안그래도 미끄러운 빙판길이라서 조심해서 걸어다니는데, 차량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어 인도인지 차도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곳은 평소에도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에 살고 있는 김모 (65)씨는 "눈이라도 없으면 피해가면 되는데 차량이 주차돼 있어 결국 잔설이 쌓여있는 곳으로 걸어야해서 신발이 젖었다"면서 "차

에 사람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게 말이 되는 상황이다"고 분개했다.

이 날 10시께 찾은 서구 삼부면영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상가가 줄이어 있는 이곳 인도 위는 심지어 차량이 두줄로 주차돼 있었다.

시민들은 인도 위 주차된 차량을 쳐다보고 지나가기도 했다.

상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상가 앞 늘상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토로하는 시민도 있었다.

인근 주민 김모 (60대·여)씨는 "평소 병원을 가려고 이 길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하루는 갑자기 차량이 인도로 들어와서 그대로 사고 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한 적도 있다"며 "알고 보니 가게 앞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왔던 것"이라고 당황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통행자가 이렇게 많은 인도에 차량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차도를 방해한다"며 "단속은 대체 언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었다.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리치네스 빌딩 앞 빙판길과 인도에 주차된 두 차량 사이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주성학 수습기자

이처럼 상가밀집지역 인근 인도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폭설로 인한 잔설이 곳곳에 쌓인 상태에서 시민들이 차량과 눈을 피

해 보도 위를 위태롭게 통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광주시 4개 자치구(동·서·남·북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도 위 불

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해마다 2천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천134건이었던 단속 건수는 2021년 6천711건, 올해 (1-11월)는 8천118건으로 상

승했다.

광산구도 인도 위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를 통합해 2020년 7천383건, 2021년 1만3천957건, 2022년 (1-11월) 1만8천2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에 무색하게 바깥이 인도 위에 주차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보행자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내년 2월까지 행정조치 대책 근거를 권고한 상태다.

이에 관련해 관할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인근 시민의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상시단속과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곧바로 출동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매장이나 상가 앞의 경우 상인들과 마찰이 일기도 한다"면서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성학 수습기자

광주 도심 곳곳 빙판길 교통사고 줄이어

출근길 사고 신고 32건...추가 대응책·운전자 주의 필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최근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제설로 도로 옆에 쌓인 눈이 녹아내린 후 밤 시간대 영하권 기온에 얼어붙어 운전자를 위협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경찰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9시 출근길 교통사고 신고는 총 32건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41분께 북구 신안동 서안대로 신안교 인근 1차로에서 승용차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오전 8시30분께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문흥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2대, 2대씩 연달아 추돌해 출근길 정체를 빚었다.

오전 8시께는 북구 하남대로 동문고가 인근 오르막길에서도 화물차가 언덕길을 울라가지 못해 30분가량 도로 정체가 있었다.

오전 7시 30분께 남구청 앞 서문대로 인근에서 접촉사고가 2-3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대형 인명피해가 없어 대부분 보험 접

수 처리로 마무리됐지만, 출근길 곳곳이 막혀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졌다.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나 언덕길 등에 빙판길이 형성돼 거북이운행을 했다.교각 등 상습블랙아이스형성구간에서도 주행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서행 운행을 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제설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도로 위에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빙판길이 형성된 미끄러운 상태"라면서 "보이지 않는 빙판길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서행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복기자

광주시의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 판결 비판

광주시의회는 27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이날 성명발표를 통해 "지난 22일 2년동안 초음파를 60여차례 사용해 환자를 진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심히 의문이 드는 판결"이라며 "초음파기기가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지만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신체검사에 바탕을 두고 다른 혈액 및 영상학적 검사를 참고해 시행된다"며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지식과 그들의 진료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광주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법치주의에 빠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사회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복기자

'군수 출마한 친척 지지 부탁' 현금 건넨 50대 벌금형

광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해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지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에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25일 오후 10시30분께 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네 주민에게 "이 후보가 제 친척이다"며 한 후보자의

명함과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같은 날 다른 주민에게도 후보자 명함을 주면서 현금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죄책이 가법지 않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복기자

1년 넘게 안찾아간 화물...대법 '운송업자, 배상 청구 가능'

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B사의 의뢰를 받아 2017년 2월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했다. B사는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화물 인수를 거부했다.

A사는 자사 소유 컨테이너에 화물을 담은 채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했다. 그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이에 A사는 2019년 3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각하 판결했다. A사가 화물 운송을 완료한 지 1년을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법 규정상 부적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청구원인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처럼 권리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까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에 상응하는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화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은 채권 발생일부터 1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산일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발생하기도 전에 행사할 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원예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